

국제지뢰행동표준(IMAS) 02.10

제1판: 2007년 8월 1일

개정3: 2013년 6월

지뢰행동 프로그램 수립 지침

Guide for the establishment of a mine action programme

처 장(Director)

유엔지뢰행동조직(UNMAS)

유엔 프라자 1, 6층

뉴욕, NY 10017 USA

이메일: mineaction@un.org

전화: +1 (212) 963 0691

팩스: +1 (212) 963 2498

웹사이트: www.mineactionstandards.org

경 고

본 문서는 표지에 표시된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국제지뢰행동표준(IMAS, International Mine Action Standards) 시리즈는 정기적인 재검토와 개정을 필요로 하므로, 사용자는 그 개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국제지뢰행동표준(IMAS)의 내용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should).

(<http://www.mineactionstandards.org/> 또는 유엔지뢰행동조직(UNMAS)
웹사이트 <http://www.mineaction.org>).

저작권 표시

본 유엔문서는 국제지뢰행동표준(IMAS)의 하나이며 그 저작권이 유엔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유엔을 대표하는 유엔지뢰행동조직(UNMAS)의 사전 서면 허가 없이, 본 문서 또는 그로부터 나온 어떤 것도 어떤 형식으로, 어떤 수단에 의해,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 복제, 저장 및 전송할 수 없다.

본 문서는 판매할 수 없다.

Director
United Nations Mine Action Service(UNMAS)
1 United Nations Plaza 6th Floor
New York, NY 10017
USA
Email: mineaction@un.org
Telephone: +1 (212) 963 0691
FAX: +1 (212) 963 2498

목 차

머리말	5
해 설	6
지뢰행동 프로그램 수립 지침	7
1. 적용범위	7
2. 참고	7
3. 용어, 정의 및 약어	7
4. 지뢰행동 프로그램 필요성 확립	8
4.1. 국가정부	8
4.2. 국가주도 프로그램	8
4.3. 유엔지원 프로그램	9
5. 지뢰행동 프로그램 수립 시 고려사항	9
5.1. 일반적인 지뢰행동 사정(査定)	9
5.2. 국가 상황	10
5.3. 실시기관	10
5.4. 자금조달	11
5.4.1. 일반사항	11
5.4.2. 국가주도 프로그램	11
5.4.3. 유엔지원 프로그램	11
5.4.4. 유엔주도 프로그램	11
5.4.5. 수행기관	12
5.4.6. 현물지원	12
5.5. 인력 요구사항	12
5.5.1. 훈련	12
6. 지뢰행동 규제, 관리 및 조정	12
6.1. 관리 및 조정	12
6.2. 국가지뢰행동기구	13
6.3. 지뢰행동센터	13
7. 지뢰행동센터 조직	14
8. 시설요건	14
9. 지원 기구	15

10. 국제지뢰행동표준 사용	15
11. 책임	16
11.1. 국가지뢰행동기구	16
11.2. 지뢰행동센터	16
11.3. 유엔	17
 부속서 A 인용(표준)	19
부속서 B (참고) 대표적인 지뢰행동센터 조직도	20
부속서 C (참고) 지뢰행동센터 설립 직접적 인력 요구사항	21
부속서 D (참고) 지뢰행동센터 기능 부서	23
D.1. 지뢰행동센터 소장	23
D.1.1. 지뢰행동센터 초기 설립	23
D.1.2. 설립된 지뢰행동센터	23
D.1.3. 설립된 국가지뢰행동기구	24
D.2. 전략관리부	25
D.3. 법률부	25
D.4. 운영부	25
D.4.1. 품질보증 및 품질관리 담당부서	27
D.4.2. 정보 관리 및 지리정보시스템 담당부서	27
D.4.3. 피해자지원	28
D.4.4. 지역사회소통	28
D.4.5. 지뢰위험교육	29
D.4.6. 계획 및 현행작업	29
D.4.7. 지뢰 탐지전, 기계적 파괴 및 비축물 파괴	29
D.4.8. 통신센터	30
D.5. 지원서비스	30
D.5.1. 물류담당부서	30
D.5.2. 인사 및 행정	30
D.5.3. 재무	31
D.5.4. 기타 지원기능	31
개정 기록	32

머리말

인도적 지뢰제거 프로그램을 위한 국제표준은 1996년 7월에 덴마크에서 개최된 국제기술회의의 워킹그룹에 의해 처음으로 제안되었다. 기준이 지뢰제거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여 정해졌고, 표준들이 제안되었고, ‘제거’의 새로운 보편적인 정의가 합의되었다. 1996년 후반에 덴마크에서 제안된 원칙은 유엔이 주도하는 워킹그룹에 의해 개선되었고, 인도적지뢰제거작업의 국제표준 시리즈로 발전되었고, 그 초판이 유엔지뢰행동조직(UNMAS, United Nations Mine Action Service)에 의해 1997년 3월에 출판되었다.

이런 초기표준의 적용범위는 이후 확장되어 지뢰행동의 여러 요소가 포함되었고, 작업절차, 실천 및 규범에 변경사항이 반영되었다. 이렇게 표준은 재정립되어, 2001년 10월에 발간된 제1판을 계기로 국제지뢰행동표준(IMAS, International Mine Action Standards)이라고 개칭되었다.

유엔은 표준 시리즈의 발전 및 유지를 포함하여 지뢰행동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장려해야 할 전적인 책임을 갖는다. 그러므로 유엔지뢰행동조직은 국제지뢰행동표준의 발전 및 유지를 담당하는 유엔의 부서이다. 국제지뢰행동표준은 제네바인도적지뢰제거국제센터(GICHD, Geneva International Center for Humanitarian Demining)의 지원에 따라 발간되었다.

국제지뢰행동표준을 준비하고 평가하고 개정하는 업무는 국제, 정부 및 비정부 조직의 지원을 받아 기술위원회에 의해 수행된다. 각 표준의 최신개정판은 기술위원회의 작업에 관한 정보와 함께 <http://www.mineactionstandards.org/>에서 찾을 수 있다. 개별적 국제지뢰행동표준은 지뢰행동의 규범과 실천을 반영하고, 국제적 규정과 요구에 따른 변경사항을 넣기 위해 최소 3년마다 재검토된다.

해 설

지뢰행동 프로그램은 인도적 비상사태 또는 평화유지 활동 상황에서 수립된 유엔주도의 지뢰 행동 프로그램일 수 있으며(may), 분쟁 후 전환단계에서 수립된 유엔지원의 지뢰행동 프로그램일 수 있고(may), 확인된 지뢰행동의 필요성 때문에 국가적으로 수립되고 관리되는 지뢰행동 프로그램일 수 있다(may). 지뢰행동 프로그램이 어떻게 설정되든, 모든 지뢰행동 프로그램의 수립에 공통적인 몇 가지 핵심 고려사항이 있다.

본 표준은 지뢰행동 프로그램의 수립에 참여한 정부 및 기타 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뢰행동 프로그램의 수립에 필요한 주요 고려사항에 대한 이해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지뢰행동 프로그램 수립 지침

1. 적용범위

본 표준은 지뢰행동 프로그램의 수립을 위해 고려해야 할 지침 및 요소를 제공한다.

2. 참고

인용표준 목록은 부속서 A에 기록되어 있다. 인용표준들은 본 표준에 인용되고, 본 표준의 일부 조항을 구성하는 중요한 문서이다.

3. 용어, 정의 및 약어

국제지뢰행동표준(IMAS, International Mine Action Standards) 시리즈에 사용된 용어, 정의 및 약어를 정리한 전체 용어집은 국제지뢰행동표준 04.10에 제공된다.

국제지뢰행동표준에서 ‘해야 한다(shall)’, ‘하는 것이 좋다(should)’ 및 ‘할 수 있다(may)’는 준수의 정도를 표현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 용법은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의 표준과 지침에서 사용되는 것과 같다.

- 1) ‘해야 한다(shall)’는 표준에 따르기 위해 적용되어야 할 요구, 방법 및 설명을 제공하는 데 사용한다.
- 2) ‘하는 것이 좋다(should)’는 선호되는 요구, 방법 및 설명을 제공하는 데 사용한다.
- 3) ‘할 수 있다(may)’는 가능한 방법 또는 방향을 제공하는 데 사용한다.

‘지뢰행동 프로그램’이란 용어는 국가지뢰행동기구(NMAA, National Mine Action Authority) 및 지뢰행동센터(MAC, Mine Action Centre)와 같은 중앙 기관이 관리하는 지뢰행동 프로젝트들을 말한다.

‘기부자’라는 용어는 지뢰피해국의 정부를 포함하여 재원을 출연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국가지뢰행동기구(NMAA, National Mine Action Authority)’라는 용어는 지뢰행동의 규정, 운영 및 조정을 위한 책임을 가진 폭발물피해국가에서 정부기관, 자주 부처연합위원회를 말한다.

참고: 국가지뢰행동기구가 없는 경우, 유엔 또는 공인된 국제기구가 지뢰행동센터 및 국가지뢰행동기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책임을 지고, 일부 또는 전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적절할 수 있다(may).

‘지뢰행동센터(MAC, Mine Action Centre)’ 또는 ‘지뢰행동조정센터(MACC, Mine Action Coordination Centre)’라는 용어는 주로 국가지뢰행동기구를 대신하여 지뢰행동 프로젝트의 기획, 조정, 모니터링 및 어떤 경우에는 실행에 책임을 지는 조직을 말한다. 지뢰행동 프로그램에서 지뢰행동센터와 지뢰행동조정센터는 주로 국가지뢰행동기구의 운영사무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4. 지뢰행동 프로그램 필요성 확립

4.1. 국가정부

지뢰문제는 어느 나라에서든 국가정부(기능하는 정부가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의 책임이다. 정부 또는 정부가 지명하는 기관은 국가지뢰행동 프로그램의 계획에 참여해야 하며, 지뢰행동 프로그램은 국가 정부의 요청 또는 동의를 받고 시작되는 것이 좋다(should).

그러나 인도적 비상사태나 평화유지활동의 경우, 정부의 동의 없이 유엔 임무의 일부분으로 지뢰행동 프로그램은 수립될 수 있지만(may), 합법적인 정부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동의를 얻으려는 시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should).

일단 기능하는 정부가 들어서면, 유엔은 정부로부터 지뢰행동 프로그램 관리를 계속할 수 있는 공식적인 위임을 받는 것이 좋고(should), 가능한 한 신속히 지뢰행동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을 정부에 이양하는 것이 좋다(should).

그러나 개별 지뢰행동 프로젝트들은 국가지뢰행동 프로그램의 수립 없이도 확립되고 기능할 수 있다(may).

4.2. 국가주도 프로그램

정부는 유엔이나 다른 국제기구의 도움 없이 자체적인 지뢰행동 프로그램을 주도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may). 그런 결정은 지뢰행동의 확인된 필요성 또는 국제조약이나 협약을 준수해야 하는 필요성에 따른 것일 수 있다(may). 그런 조약이나 협약에는 1997년 대인지뢰금지협약(APMBC, Anti-Personnel Mine Ban Convention) 또는 오타와 협약(OT, Ottawa Treaty), 유엔 재래식 무기 사용금지 협약(CCW, Convention On Certain Conventional Weapon)의 지뢰, 부비트랩 및 기타장치 사용금지 혹은 제한에 관한 제2개정정의정서 및 전쟁잔류폭발물(ERW, Explosive Remnants of War)에 관한 제5의정서 그리고 확산탄금지협약(CCM, the 2008 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등이 포함된다.

4.3. 유엔지원 프로그램

유엔주도 또는 유엔지원의 지뢰행동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관한 모든 결정은 해당 국가의 상황에 관한 공식적인 사정(査定)에서 출발하는 것이 좋으며(should), 여기에는 지뢰 상황의 범위와 영향을 직접 알아내기 위해 관련 국가에 대한 사정 임무가 포함될 수 있다(may). 자세한 내용은 국제지뢰행동표준 07.11 토지해제, 국제지뢰행동표준 08.10 비기술조사 및 국제지뢰행동표준 05.10 지뢰행동 정보관리를 참조.

국가 사정(査定)에서는 국가지뢰행동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이 실제로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다(should).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지뢰행동을 포함하여 진행 중인 지뢰행동에 대해 충분한 이해도 포함되는 것이 좋다(should).

유엔지원 국가지뢰행동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기로 하는 결정은 그런 필요성을 드러내는 충분한 정보수집의 결과여야 한다.

5. 지뢰행동 프로그램 수립 시 고려사항

5.1. 일반적인 지뢰행동 사정(査定)

지뢰행동 프로그램의 수립 결정은 국가정부 또는 유엔이 사용 가능한 정보로부터 얻은 확인된 지뢰행동의 니즈를 기반으로 할 것이다. 이 단계에서 모든 지뢰행동의 적용 범위 및 규모를 알 수 없으며, 이용 가능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런 계획을 수립할 때는 정보수집 및 분석 과정을 가능한 한 빠르게 수행하여 지뢰문제와 지뢰가 지뢰피해지역, 인도주의활동 및 개발활동의 남성, 여성,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사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 사정(査定)에는 긴급조사, 지뢰영향조사(LIS, Landmine Impact Surveys) 및 지뢰위험교육(MRE, Mine Risk Education)의 필요성 사정 같은 활동이 포함될 수 있다(may). 다음 조항 5.2에서 논의될 국가적 상황은 이 사정의 적용 범위 및 규모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사정(査定)에 의해 수집된 정보는 지뢰행동 개입 필요성, 규제, 관리와 조정 요건 및 작업 수행에 필요한 자원을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정보는 또한 국제 인도적 개발의 우선순위와 관련 국가지뢰행동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지뢰 문제의 진정한 범위는 사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램 실행기간 내내 정보의 수집, 처리, 분석, 저장 및 적용이 요청된다.

5.2. 국가 상황

특정 국가상황은 인도적 활동, 개발 활동 및 지뢰행동 활동의 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지뢰행동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동안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이 존재한다.

- 1) 인프라가 열악한 상태에 있다. 일부 국토에 대한 접근 및 통신, 의료지원, 전기, 식품 및 물과 같은 필수 서비스와 물품제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 안전 상태가 불안정할 수 있다(may). 이는 특정 지역에 한할 수도 있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may).
- 3) 많은 피난민이 있을 수 있다(may). 이들의 재정착이 시작될 경우 지뢰 및 전쟁잔류폭발물에 대한 더 나은 이해가 얻어질 것이다.
- 4) 지뢰행동, 인도적, 개발 단체가 아직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았다.
- 5) 담당하는 중앙관리기구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may).
- 6)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조건이 지뢰행동 프로그램의 수립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안전상태 및 인프라가 허용되는 지역에서 긴급한 지뢰행동과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자원 확보와 더불어 지뢰행동 프로그램을 수립하기 위한 초기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should). 먼저 초점을 맞춰야 좋은 것(should)은 지뢰피해자와 지뢰위험교육에 대한 지원과 구호단체 및 인도적 구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일부 제한적인 지뢰제거이다.

그래서 추가계획이 수립되는 것이 좋은데(should), 이는 국가 상황이 개선될 때, 그런 프로그램을 통하여 신속하게 지뢰제거 활동을 확장해서 새로운 접근 가능한 지역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5.3. 실시기관

지뢰행동은 다음과 같은 조직을 통해 수행할 수 있다(may).

- 7) 영리단체
- 8) 국가 또는 국제 비정부조직
- 9) 군부대와 같은 정부조직
- 10) 유엔아동기금(UNICEF, 지뢰위험교육 책임)과 같은 유엔 기구
- 11) 유엔, 국가지뢰행동기구 및 지뢰행동센터에 속한 국가기관의 정규직 직원
- 12) 지뢰피해지역에서 훈련 받은 남성과 여성 개인에 의해 수행되는 지역기반 지뢰제거

여러 실행 기관들이 연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계획을 세우는 동안, 지뢰행동의 규제, 관리 및 조정을 위한 조직 및 시설 요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뢰행동 활동이 어떻게 실행되어야 하는지를 어느 정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런 사전지식은 입법 또는 규제 요건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면, 계약된 지뢰행동이 수행되려면 계약운영능력이 프로그램 안에서 확립되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제지뢰행동표준 07.20 지뢰행동 계약개발 및 관리 지침을 참고하라. 대안으로 정부 기관이 지뢰행동을 수행하는 경우(예: 군대), 이런 상황에서 기존 규제에 의해 운영되는 기존 조직 내에서 지뢰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may).

국가에서 인도적 단체, 개발단체 및 지뢰행동단체가 지뢰행동 프로그램이 확립되기 전에 설립되고 활동하는 일은 흔한 일이다. 이 경우 활동하고 있는 지뢰행동단체를 지뢰행동 프로그램에 편입시켜서 인도적 또는 개발 단체에서 우선시 되는 지뢰행동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should).

5.4. 자금조달

5.4.1. 일반사항

어떤 지뢰행동도 수행기관과 관리 및 조정 기관의 비용을 충당하는 데 필요한 재정지원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5.4.2. 국가주도 프로그램

국가주도 사업의 경우, 정부는 국민 중 개인이나 외부 기증자 또는 대출을 통해서 필요한 자금을 제공해야 한다. 유엔신탁기금(The UN Voluntary Trust Fund)은 국가주도 사업에 대한 초기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may), 국가주도 사업이 자체적으로 지뢰행동 신탁기금을 설립할 수 있다(may). 많은 정부는 양자 관계에 바탕을 두고 지뢰행동 자금을 지원하려고 한다.

5.4.3. 유엔지원 프로그램

유엔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은 종종 자체 비용에 대한 초기 자금과 지뢰행동에 대한 제한된 자금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유엔개발계획의 역할은 보통 국가주도 사업에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스스로 자원을 동원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또한 유엔개발계획은 국가 신탁기금의 관리를 도와줄 수 있다(may).

5.4.4. 유엔주도 프로그램

지뢰신탁기금의 관리자로서 유엔지뢰행동조직은 자체 자금을 마련하고 유엔주도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 조달에 책임이 있다. 전체 프로그램 비용에 추가적인 원조기금이 여전히 필요할 수 있다(may).

5.4.5. 수행기관

국가 또는 국제 비정부기구와 같은 많은 수행기관은 비록 비용 일부를 국가나 유엔 기금에 의존하기는 하지만, 그들 스스로 기금을 마련한다.

5.4.6. 현물 지원

어떤 경우에는 직접적인 자금 지원 대신에 기부자에 의한 현물 지원이 제공될 수 있다(may). 현물 지원은 지뢰행동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인력, 장비, 자재 또는 설비의 제공을 포함할 수 있다(may).

5.5. 인력 요구사항

지뢰행동 프로그램의 수립에 있어 필수적인 것은 지뢰행동 활동을 수행하는 운영 수준과 지뢰 행동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국가지뢰행동기구 및 지뢰행동센터 수준에서 가용하며 자격을 갖춘 남녀 인력을 갖추는 것이다. 지뢰행동 프로그램 수립을 위한 계획에 인력 요구사항에 대한 숙고가 포함되는 것이 좋다(should). 직원구성에 있어서 성별 균형과 프로필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shall). 부속서 B에 첨부된 자료는 지뢰행동센터 설치를 위한 직접적 인력 요구사항의 총괄요약이다.

5.5.1. 훈련

모든 인력은 공식적인 훈련이든, 직무 훈련이든, 보충 훈련이든, 새로운 장비나 시스템 및 절차에 대한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조직, 지뢰행동 인력 및 전문가 팀(예: 지뢰탐지견[MDD, Mine Detection Dog(s)] 팀)의 훈련 필요성을 지뢰행동 프로그램의 일부로 고려하는 것이 좋다(should). 직원구성에 있어 성별 균형과 프로필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shall). 국제지뢰행동표준 06.10은 교육훈련관리에 대한 추가 지침을 제공한다.

6. 지뢰행동 규제, 관리 및 조정

6.1 관리 및 조정

일반적으로 지뢰행동 프로그램의 규제, 관리 및 조정은 두 단계로 수행된다. 국가지뢰행동기구는 지뢰행동과 관련된 광범위한 전략 및 정책 결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뢰행동센터는 일상적인 관리를 하고, 경우에 따라 지뢰행동 프로젝트의 실행을 담당한다. 두 단계의 관리는 하나

의 조직에서 결합될 수 있지만(may), 일반적으로 두 조직으로 분리되어 있다.

이상적으로 국가지뢰행동기구와 지뢰행동센터는 지뢰행동 활동을 규제하는 국가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것이 좋다(should). 이 법은 어떤 정부 부처, 부서 또는 행정 구성원이 국가지뢰행동 기구의 활동을 감독하거나 책임질 것인지를 명시하는 것이 좋으며(should), 국가지뢰행동기구의 구성원이 될 부서 및 공무원 또한 명시하는 것이 좋다(should). 그러한 기관에는 일반적으로 지뢰행동의 일부 측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정부 부처 또는 부서(예: 국방부, 교육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내부 및 사회 서비스부)의 공무원 및 작업계획이 지뢰 및 기타 전쟁잔류폭발물 오염에 의해 상당히 제약될 수 있는(may) 부서(예: 농림부, 교통부, 전력부)의 공무원들이 포함된다. 또한 법안은 지뢰행동센터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지뢰행동기구 회의를 주재할 부처 또는 부서를 명시하는 것이 좋으며(should), 국가지뢰행동기구의 사무국 역할을 할 부처 및 부서 또한 명시하는 것이 좋다(should). 또한 효과적인 국가지뢰행동기구는 국제기구, 기타 기관의 대표자 또는 지뢰행동에 참여하는 단체의 대표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may).

이런 조직들은 설립될 수 있지만(may), 일부 경우, 특히 국가주도 사업일 경우, 기존 조직이 지뢰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may). 예를 들면, 만약 지뢰행동이 군에 의해 수행될 경우, 군은 지뢰행동을 수행하는 동안 국가지뢰행동기구에 보고할 수 있는 민간 당국의 관리하에 있을 수 있다.

6.2 국가지뢰행동기구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국가지뢰행동기구(NMAA, National Mine Action Authority)는 피해를 입은 국가에서 지뢰행동의 정책 수립, 관리, 감독 및 조정을 담당하는 주요기관이다. 그러나 일상적인 관리 및 조정은 일반적으로 국가지뢰행동기구의 운영 단계의 부서인 지뢰행동센터에 의해 수행된다. 아래 11.1 조항의 국가지뢰행동기구의 구체적 책임을 참조.

모든 지뢰행동 프로그램 수립에 별도의 국가 기관이 설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주도 사업일 경우 지뢰행동의 규제, 관리 및 조정은 기존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may).

유엔 주도 지뢰행동 프로그램이 수립되었을 때, 국가지뢰행동기구를 설립할 수 있는 국가 여건이 마련되지 않을 수 있지만(may), 유엔은 조건이 갖춰지는 즉시 국가지뢰행동기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국가 정부를 격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좋다(should).

6.3. 지뢰행동센터

지뢰행동센터(MAC, Mine Action Centre)는 국가지뢰행동기구의 정책을 실행하고 일상적인 지뢰행동 활동을 관리하는 운영기관이다. 지뢰행동센터는 국가지뢰행동기구에 의해 직접 설립될

수 있거나(may) 유엔과 같은 다른 기관의 지원과 도움으로 설립될 수 있다(may).

일부 상황에서, 특히 지뢰행동 프로그램의 비상 시작 단계에서, 지뢰행동센터는 유엔이나 다른 국제기구에 의해 수립되며, 처음에는 국가지뢰행동기구의 일상적인 관리기능을 맡는다. 이후 안정된 상황에서 통치기관이 자리를 잡으면, 국가지뢰행동기구와 국가적으로 운영되는 지뢰행동센터의 설립에 중점을 두는 것이 좋다(should).

경우에 따라, 특히 전국적으로 확립된 지뢰행동 프로그램의 경우, 별도의 지뢰행동센터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may). 지뢰행동의 규제, 관리 및 조정을 담당하는 당국은 이미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 구조와 규정을 갖추고 있을 수 있다(may).

지뢰행동센터는 일부 활동을 직접 수행할 수 있지만(may), 보다 일반적으로는 정부부처,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및 상업적 운영자, 즉 실시기관의 개입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정 국가에서 요구되는 구체적인 활동은 불발 자탄 문제를 포함한 지뢰 및 전쟁잔류폭발물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경우에 따라 지뢰행동센터에는 자체적으로 지뢰제거 팀을 운영할 수 있다(may). 그러나 지뢰행동센터가 자체 팀의 작업에 너무 집중해(may) 실시기관들 사이의 조정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 방식은 덜 성공적일 수 있다(may). 이때 이해의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데(may), 왜냐하면 자체 팀이 있는 지뢰행동센터는 규제기관으로서 ‘심판자’이며 동시에 ‘선수’가 되기 때문이다. 상기 조항 5.3의 실시기관을 참조하라.

7. 지뢰행동센터 조직

지뢰행동은 지뢰위험교육, 피해자지원, 지뢰제거, 비축물 파괴 및 대인지뢰 사용 반대 옹호 등 특정 활동을 포함한다. 이러한 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뢰행동센터의 부서는 비교적 표준적이며, 지뢰행동센터의 일반 조직은 모든 상황에 적합하도록 결정될 수 있다. 그러한 일반 조직의 사례는 부속서 B와 C에 포함된다. 이 일반 조직은 특정 지뢰행동 활동이 계획 내에서 수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활동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부서를 없애지만, 기본 조직은 그대로 유지한다. 지뢰행동센터의 부서는 부속서 D에서 자세히 설명된다.

8. 시설요건

지뢰행동 프로그램 수립을 위해 계획할 때 시설 요건을 고려해야 한다. 국가지뢰행동기구, 국가의 지뢰행동센터 및 지역 지뢰행동 사무실은 사무 시설이 필요하다. 시설은 지뢰행동 프로그램의 향후 확장 가능성, 성별 및 다양성을 고려하여 선택되고, 관련 사무실의 모든 부서가 충분한 공간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should).

인정(지뢰탐지전 시험 영역) 및 교육(건물 및 교육 영역)에 대한 시설 요건도 고려하는 것이 좋으며(should), 여기에는 지뢰탐지전 및 기계조작전문가 교육이 포함될 수 있다(may).

폭발물 보관 요건(폭과 폭발물 및 필요할 경우의 유기폭발물[AXO, Abandoned Explosive Ordnance]과 안전하게 이동해야 하는 불발탄)도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고려해야 한다. 현행 보안상황은 이러한 시설 설립의 한 요인이 될 수 있다(may).

또한 폭발물 처리(EOD, Explosive Ordnance Disposal) 과제(처리 영역)와 장비의 시험평가에 대한 시설도 필요할 수 있다(may).

9. 지원 기구

지뢰 피해국들에 대한 인도적 및 개발 지원(지뢰행동 포함) 제공에 대해 폭넓은 경험을 가진 국제기관이 다수 존재한다. 유엔지뢰행동조직, 유엔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유니세프(UNICEF, the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유럽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 미주기구(OAS,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와 같은 기관들은 모두 다수 국가의 지뢰행동에 기여했으며, 종종 도움이나 조언을 제공한다. 제네바인도적지뢰제거국제센터(GICHD)나 지뢰행동 비정부기구와 같은 다른 민간단체들도 지침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10. 국제지뢰행동표준 사용

유엔지뢰행동조직은 지뢰행동 프로그램의 계획, 실행 및 관리를 안내하는 표준을 개발하도록 의무화되었다. 국제지뢰행동표준은 지침을 제공하고, 원칙을 확립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 요건과 규격을 정의함으로써, 지뢰행동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또한 국제지뢰행동표준은 국가지뢰행동기구가 국가 표준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참조의 틀을 확립함으로써, 국가 표준 및 국가 표준운영절차(SOPs,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를 수립하도록 지원한다.

현행 국제지뢰행동표준 시리즈는 www.mineactionstandards.org에서 이용할 수 있는데, 이것은 국가지뢰행동 프로그램을 수립하고자 하는 정부나 조직에 중요한 참고자료를 제공한다.

11. 책임

11.1 국가지뢰행동기구

국가지뢰행동기구는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해당 국가의 지뢰행동과 관련된 광범위한 전략 및 정책 결정을 담당한다.

- 1) 지뢰행동 법률제정의 설계 및 감독
- 2) 지뢰 및 전쟁잔류폭발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국가의 정책, 전략, 우선순위 및 작업계획의 수립 또는 정부에 권고(즉, 국가지뢰행동계획)
- 3) 정부, 일반 국민, 기부자, 유엔 및 기타 관련 이해당사자에게 지뢰행동의 진행 상황 보고
- 4) 지뢰행동센터의 업무 감독
- 5) 지뢰행동과 관련된 국제조약을 포함하여 지뢰행동 사안에 관하여 정부에 자문하는 일, 정부 부서 및 기관의 업무 프로그램들이 불발자탄 오염을 포함한 지뢰 및 기타 전쟁잔류폭발물에 의해 지장을 받을 경우 그들이 취하면 좋은(should) 조치에 관하여 안내하는 정책을 자문하는 일, 그리고 국제조약에 가입할 경우 국가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과 그 의미에 관하여 자문하는 일
- 6) 국제개발기관(양자적 공여자, 유엔기관, 다자개발 은행, 비정부기구 등)의 업무 프로그램이 지뢰 및 기타 전쟁잔류폭발물 오염의 영향을 받을 때 그들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안내하는 정부정책을 수립하거나 권고하는 것이 좋다(should).
- 7) 성(性) 및 다양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지뢰행동 활동을 규제하는 국가 표준, 규정, 지침 또는 절차가 반드시 규정되도록 한다. 이는 국제지뢰행동표준 및 관련 국가 법률에 근거하는 것이 좋다(should).
- 8) 국가 및 국제 자원으로부터 자원동원

11.2 지뢰행동센터

지뢰행동센터는 운영 수준에서 지뢰행동을 감독하는 기구로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 1) 정부 기관(있는 경우), 인도주의 및 개발 에이전시와 소통하여 즉각적 및 중기적 우선순위의 지뢰행동이 무엇인지 결정하고 이러한 우선순위를 다루는 계획의 준비를 결정
- 2) 지뢰행동의 국가 및 지역 수준 관리를 추정하여 지뢰행동 활동의 즉각적 및 중기적 우선순위를 충족하는지 확인
- 3) 관리 정보 시스템 구축. 이는 지뢰행동 정보관리시스템(IMSMA,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for Mine Action) 또는 이와 유사한 시스템일 수 있음(may)
- 4) 지뢰 문제와 그것이 남성, 여성 및 어린이에게 미치는 다양한 영향에 대한 종합적 사정을 위해 정보 수집 및 정보 분석 과정을 수립하고 시행

- 5) 국가 인도주의, 개발 계획 및 국가지뢰행동계획 간의 조화 보장
- 6) 지뢰행동 활동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국가지뢰행동표준(NMAS, National Mine Action Standards)과 내부 시스템 및 절차 개발
- 7) 국가지뢰행동계획 실행
- 8) 지뢰행동 운영자를 인정하고 지뢰행동 활동을 모니터하는 행위
- 9) 국가지뢰행동기구의 사무국으로서 활동

11.3 유엔

지뢰위험에 대한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보장하기 위해 유엔지뢰행동 활동은 국가 소유권, 기관구축과 역량개발을 촉진하고 국제지뢰행동표준의 핵심 요구사항들을 준수해야 한다.

유엔지뢰행동조직은 평화유지활동국(DPKO, Department of Peacekeeping Operation)의 한 부서이며 유엔시스템 안에서 지뢰행동의 중심축이다. 유엔지뢰행동조직은 유엔의 여러 부서, 기관, 기금 및 프로그램과의 협력을 통해 지뢰오염에 대한 효과적이고 예방적이며 통합적인 유엔의 대응을 보장하고자 한다.

유엔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은 지뢰피해 국가의 요청에 응답하기 위하여 국가지뢰행동 프로그램이 수행하는 지뢰행동의 모든 측면에 대하여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유엔개발계획은 본부에 설치된 위기예방과 회복국(BCPR, Bureau for Crisis Prevention and Recovery)의 나라별 지부 및 지뢰행동 팀을 통해 지뢰피해 국가를 지원하여 국가 및 지역 지뢰행동 프로그램을 설립, 강화시키고 지뢰행동의 모든 세부사항을 수행하게 한다.

유엔아동기금(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은 무력충돌의 피해를 당한 남자어린이들과 여자어린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유엔아동기금은 여러 파트너(정부, 다른 유엔기구 및 기금, 국제기구, 지역조직, 비정부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주로 지뢰위험교육 프로젝트 및 관련 인도적 활동의 개발과 시행을 지원한다.

유엔프로젝트조달기구(UNOPS, United Nations Office for Project Services)는 유엔지뢰행동조직, 유엔개발계획 및 다른 지뢰행동 파트너들과 협력하며 지뢰행동 분야의 주요 서비스 공급자이다. 유엔프로젝트조달기구는 유엔으로부터 관리 혹은 지원을 받는 지뢰행동 프로그램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유엔기관 혹은 유엔과 국가 정부 사이에서 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시행에 따른 연속성을 제공할 수 있다(may).

군축업무사무국(ODA, Office of Disarmament Affairs)은 사무총장의 책임 이행에 대해 조언하고 보좌하며 대인지뢰금지협약(APMBC, Anti-Personnel Mine Ban Convention), 확산탄금지협약

(CCM, the 2008 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 및 그 의정서의 수탁자로 사무총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한다.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의 임무는 국내외 활동가와의 동반관계를 통해 효과적이고 주요한 인도적 행동을 준비하고 조정하는 일이다. 인도주의업무조정국은 유엔지뢰행동 팀과 정부, 원조국 및 다른 파트너들에 의하여 국제적, 지역적 및 국가적 레벨에서 수립된 여러 다른 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한다.

유엔난민기구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은 난민 및 고등판무관의 관심 대상자들의 권리를 보호, 증진하는 것을 주 의무로 한다. 유엔난민기구는 다수의 국가에서 지뢰제거 프로그램, 지뢰위험교육 프로젝트, 난민들의 복귀 및 재통합과 관련하여 수반되는 인도적 활동을 확인하고 지원한다.

세계식량계획(WFP, World Food Programme)은 식량을 사용하여 긴급한 구호를 행하고 경제사회적인 발전을 지원한다. 세계식량계획이 지뢰행동에 개입하는 것은 식량지원 의무와 관련이 있으며, 인도적인 식량 대응이 지뢰 및 전쟁잔류폭발물로 인해 제한된 상황에서 지뢰행동을 지원하는 일과 지정 수혜자들에게 식량이 도달하지 못하는 일, 그리고 지뢰제거 프로그램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지역기반 프로그램에 식량을 통해 지원하는 일에 초점을 맞춘다.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는 보건부를 통해 지속 가능한 피해자 지원을 위한 보건 서비스 역량구축의 추진은 물론 적절한 표준 및 방법론의 개발에 책임이 있다. 지뢰행동에 관여하는 여러 유엔 파트너에게 공공 기술 보건지원을 제공하며 유엔아동기금 및 국제적십자사와 긴밀하게 협력한다.

부속서 A 인용(표준)

다음의 표준문서에는 본 표준의 본문에서 참고하거나 본 표준의 일부 내용을 구성하는 조항들이 포함된다. 인용날짜 이후에 이루어진 인용문서의 수정 및 개정 내용은 본 판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표준의 인용내용에 기반을 둔 협약당사자들은 가능한 다음에 열거한 표준문서의 최신판을 찾아 적용하기를 권장한다. 인용날짜가 없는 경우는 표준문서의 최신판이 적용되었음을 말한다.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및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회원들은 유효한 현행 국제표준화기구 및 유럽표준화기구(EN, European Normalisation)의 등록자격을 갖는다.

- 1) 국제지뢰행동표준 03.10 지뢰행동 장비조달 지침
- 2) 국제지뢰행동표준 03.20 조달 절차
- 3) 국제지뢰행동표준 03.30 지뢰행동 기술연구 지침
- 4) 국제지뢰행동표준 03.40 지뢰행동 장비 시험평가
- 5) 국제지뢰행동표준 04.10 지뢰행동 용어, 정의 및 약어집
- 6) 국제지뢰행동표준 05.10 지뢰행동 정보관리
- 7) 국제지뢰행동표준 06.10 교육훈련관리
- 8) 국제지뢰행동표준 07.11 토지해제
- 9) 국제지뢰행동표준 07.20 지뢰행동 계약개발 및 관리 지침
- 10) 국제지뢰행동표준 08.10 비기술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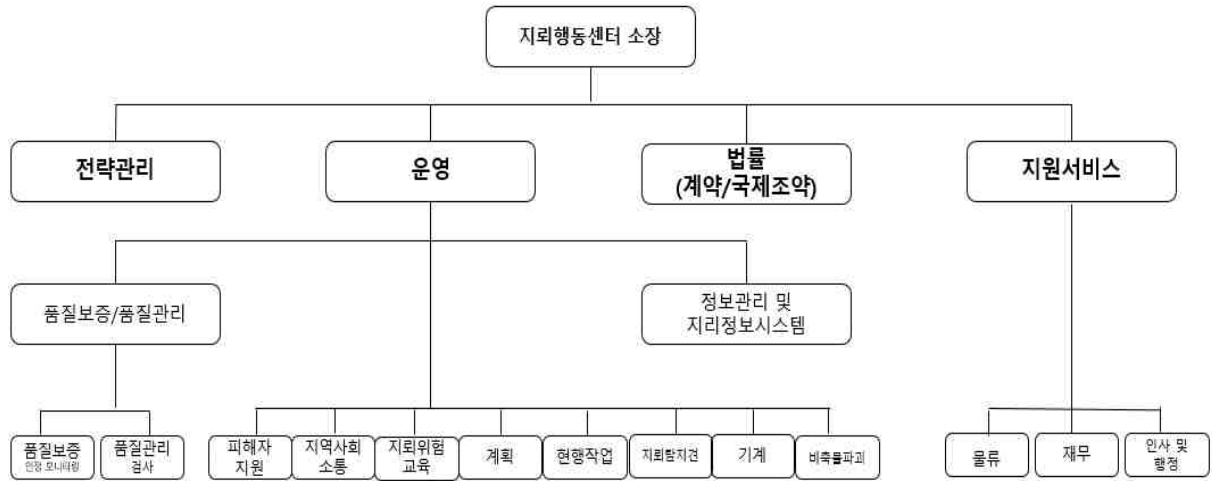
본 참고문서들의 최신번역 및 최신판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should). 제네바인도적지뢰제거국제센터(GICHD, Geneva International Center for Humanitarian Demining)가 본 표준에서 사용된 모든 인용표준의 사본을 보관한다. 국제지뢰행동표준, 지침, 참고자료의 최신 번역 및 판본의 등록은 제네바인도적지뢰제거국제센터가 관리하며, 국제지뢰행동표준 웹사이트(<http://www.mineactionstandards.org/>)에서 찾을 수 있다. 국가지뢰행동기구, 직원 및 기타 관심 있는 기관 및 조직은 지뢰행동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사본을 입수하는 것이 좋다(should).

추가적으로 유용한 참고

- 11) 지뢰행동 계획을 위한 유엔 핸드북
- 12) 지뢰행동 및 전쟁잔류폭발물 지침-제네바인도적지뢰제거국제센터, 2007년 4월
- 13) 지뢰행동 법안제정 지침-제네바인도적지뢰제거국제센터, 2006년 3월
- 14) 국제지뢰행동표준 지침-제네바인도적지뢰제거국제센터, 2006년 4월
- 15) 유엔 부처간 지침-지뢰행동 및 효과적인 조정-2005년 6월
- 16) 지뢰행동 프로그램의 유엔 젠더 지침

부속서 B (참고)

일반사항 지뢰행동센터 조직도



참고: 지뢰행동센터는 국가지뢰행동 정보소통 네트워크를 위한 통신망의 통제소가 되는 것이 좋은 (should) 통신센터를 포함할 수 있다(may). 이 경우 통신센터는 위 조직도상 운영 부서에서 관리하게 될 것이다.

부속서 C (참고)

지뢰행동센터 설립 직접적 인력 요구사항

직 위* ¹	부 서	역 할
지뢰행동센터 소장	관리부	소장은 최초의 임명직 직책들 가운데 하나이며, 지뢰행동센터의 초기 설립을 위해 나머지 직원의 선정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should)
전략관리 부장	전략관리부	전략관리부장은 필요성 사정(예: 비기술조사 또는 정부 및 개발 기관과의 지뢰영향 조사 및 협의), 전략실천을 위한 전략 및 계획수립, 제거 후 평가를 통한 결과 평가 등을 책임진다. 전략관리부장은 자원동원을 위해 지뢰행동센터 소장을 보좌하며, 계획수립을 위해 운영부장과 협력하고, 정부 기관, 기부 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지뢰제거 지원의 필요성을 결정한다.
운영부장	운영부	운영부장은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일반조사의 계획 및 실시, 지뢰행동 운영의 관리, 표준 및 절차의 개선을 위해서 하위 조직의 업무를 조정하고 모니터한다. 운영부장은 지뢰행동센터 소장의 프로그램 개선 작업을 돕고, 전문직원이 없는 경우 지뢰행동센터의 기능에 전문가 지원을 제공한다.
품질보증 및 품질관리 담당	운영부	품질보증/품질관리 담당은 지뢰행동단체의 인정을 위한 품질보증 및 품질관리 절차의 개발과 지뢰제거작업의 모니터링 및 점검 그리고 필요한 경우 비축지뢰 파기작업의 검증에 처음부터 관여한다. 품질보증 및 품질관리 담당도 표준 및 절차의 개발에 참여하며, 현행의 지뢰제거 작업에 대한 품질보증 및 품질관리를 수행하도록 요구된다.
품질보증 및 품질관리 모니터요원	운영부	품질보증 및 품질관리 모니터요원은 품질보증 및 품질관리 절차의 개발을 지원하고 품질보증 및 품질관리 작업을 수행한다. 지뢰행동센터가 더 많이 설립된다면 품질보증 및 품질관리의 모니터 요원들은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may).
운영담당	운영부	운영담당은 계획 및 현행 작업업무(일반조사 포함)를 수행하며, 표준 및 절차 개발을 지원하고, 운영부장과 지뢰행동센터 소장이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한다. 지뢰행동센터가 더 잘 설립된다면 계획 및 현행 작업업무는 그 임무를 성취하기 위해서 현재의 운영담당을 계획 운영담당으로 나누어 맡길 수 있다(may).

운영보조	운영부	운영보조는 운영부장과 운영담당을 보좌한다. 지뢰행동센터가 확립되면 추가 운영보조가 필요할 수 있다(may).
지역사회 소통 및 지뢰위험교육 담당	운영부	지역사회 소통과 지뢰위험교육의 겸임담당은 지뢰행동 프로그램의 초기 단계에서 피해를 받은 지역사회의 요청에 응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소통의 기능을 지뢰행동 내에서 조정할 책임이 있다. 또한 지역사회 소통과 지뢰위험교육 담당에게 요청되는 임무는 조사계획 및 수행에 지뢰위험교육 정보를 제공하여 지뢰위험교육의 필요성 사정(査定)을 위한 데이터가 잘 수집되도록 돕는 것이다. 이미 지역사회 소통과 지뢰위험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들과의 연락은 또한 그런 활동을 모니터하여 필요한 조정역할을 제공하도록 만든다. 프로그램이 발전함에 따라 지역사회 소통과 지뢰위험교육 기능은 분리될 수 있다(may).
정보관리 담당	운영부	정보관리 담당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지뢰행동의 우선순위 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거나 공유하기 위한 외부기관과의 연락, 운영부장의 모니터링 하에 프로그램에 사용하기 위한 보고서의 개발 또는 조정, 데이터베이스에 정보입력 그리고 정보관리를 위한 시스템 및 절차의 개발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정보관리담당은 또한 지뢰행동의 실행계획 및 지뢰행동 과제의 수립을 위하여 운영부장 및 운영담당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다.
데이터 입력 사무원	운영부	데이터 입력사무원은 데이터 확인 및 검증,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 입력,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보고서 및 지도의 준비를 도울 책임이 있다. 정보의 양에 따라 데이터 입력사무원이 더 필요할 수 있다(may).
지원서비스 담당	지원 서비스부	지원서비스 담당은 지뢰행동센터를 지원하는 지원서비스 기능(물류, 인사 및 행정)을 책임진다. 재무부문의 업무도 총괄하지만, 재무관리의 총괄책임은 지뢰행동센터 소장에게 있다. 프로그램이 개선되면 재무계는 지원 서비스부에서 재무담당 아래 있는 하나의 독립된 부서로 분리될 수 있다(may).
지원서비스 보조	지원 서비스부	지원서비스 보조는 처음에는 지원서비스 담당의 업무를 보좌한다. 지뢰행동센터가 잘 정착되면 추가적인 지원서비스 보조들이 필요할 수 있으며(may), 물류, 인사 및 행정 기능은 조직으로 확실히 분리된다.
재무 보조	지원 서비스부	재무보조는 지뢰행동센터 소장의 총괄적 재무관리와 함께 프로그램에 할당된 재정을 일상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다. 프로그램이 개발되거나 재정관리가 더 복잡해지면 이 직책은 추가적인 재무보조가 필요한 재무 담당으로 격상될 수 있다. 재무의 총괄적인 관리는 지뢰행동센터 소장의 역할로 남는다.

*¹ 참고: 직명은 프로그램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may).

부속서 D(참고)

지뢰행동센터 기능 부서

D.1. 지뢰행동센터 소장

지뢰행동센터 소장은 지뢰행동센터 및 지뢰행동 프로그램의 관리를 담당하지만, 지뢰행동센터의 설립 단계 및 국가지뢰행동기구의 기능 여부에 따라 역할이 달라질 수 있다.

D.1.1. 지뢰행동센터 초기 설립

국가지뢰행동기구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지뢰행동센터 설립 초기에 소장은 즉각적인 지뢰행동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원을 수급하고, 실천하는 것을 확인할 책임이 있다. 아직 수행되지 않은 경우, 여기에는 오염이 의심되는 모든 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비기술조사, 일반조사, 지뢰영향 조사 등)를 위한 규정을 포함하는 것이 좋으며(should), 이는 지뢰행동을 위한 즉각적인 요구사항과 향후 필요한 일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지뢰행동센터 소장의 책임은 다음과 같은 일을 위하여 기존 정부, 인도적 기관 및 개발사업의 에이전시와의 연락을 유지하는 것이다. 즉, 지뢰행동을 위한 단기 및 중기적 우선순위 확립, 프로그램에서 수행되고 있는 지뢰행동 활동의 관리를 감독하여 우선순위와 허용 가능한 표준을 충족하는지 확인, 지뢰행동 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 사정(査定)이나 조사 활동의 실시에 대한 감독, 개발의 우선순위 파악 및 국가지뢰행동계획의 초안 작성, 지뢰행동관리를 위한 국가지뢰행동표준 제작, 내부 시스템 및 절차의 감시 등이 포함된다. 지뢰행동의 모든 단계에서 성(性)의 다양성 문제는 존중되어야 한다(shall).

더 나아가 지뢰행동센터 소장은 지뢰행동센터의 예산관리를 담당하며, 지뢰행동센터의 직원채용, 장비조달, 시설선정 등에 주된 역할을 담당한다.

전략적 수준에서 지뢰행동센터 소장은 수립된 국가통치기관과 소통하고, 유엔, 기부자 및 기타 이해당사자에게 연락하고 보고할 책임이 있다.

D.1.2. 설립된 지뢰행동센터

지뢰행동센터가 한번 설립되면 지뢰행동센터 소장은 지뢰행동 프로그램의 효과와, 안전성 및 개발기회 개선의 측면에서 지뢰행동 프로그램의 영향에 대해 더 관심을 갖게 된다.

지뢰행동센터 소장의 역할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1) 지뢰행동 자원 및 예산관리를 포함한 자원 동원

- 2) 지뢰행동지원이 필요한 단체와의 연락
- 3) 국가지뢰행동계획의 이행 관리(여기에는 상황이나 우선순위가 변경되고 더 많은 정보이용이 가능해졌을 경우 계획의 수정을 포함할 수 있다[may].)
- 4) 지뢰행동 업무계획의 개발, 구현 및 관리 모니터링
- 5) 산업안전보건을 포함한 지뢰행동에 대한 기술, 품질 및 안전표준 보장
- 6) 지뢰행동센터 및 지뢰행동 프로그램이 국제표준과 지뢰행동 기술발전에 발맞춰 최신 상태를 유지하고, 지뢰행동센터 및 지뢰행동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그들의 업무의 품질과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보장(예산 제한 포함)
- 7) 지뢰행동 프로그램 또는 지뢰행동 프로그램 요소의 평가가 기부자 및 기타 주요 이해당사자의 경영 니즈 및 요구사항에 따라 수행되도록 보장
- 8) 지뢰행동 직원의 역량향상을 위한 교육활동 지시. 지뢰행동센터의 소장은 또한 지뢰행동센터의 인력과 장비 관리를 감독할 책임이 있다.

전략적 수준에서 지뢰행동센터 소장은 국가통치기관과 연락하고 유엔, 기부자 및 기타 이해당사자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다. 지뢰행동센터 소장은 국가지뢰행동기구가 설립되면 국가지뢰행동기구의 역량강화에 직접 관여할 수 있다(may).

D.1.3. 설립된 국가지뢰행동기구

국가지뢰행동기구가 설립되어 기능하고 있는 경우, 국가지뢰행동기구가 국가적인 차원의 책임을 부담함에 따라 지뢰행동센터 소장의 역할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 국가지뢰행동계획의 수정 결정은 국가지뢰행동기구가 할 것이다. 지뢰행동센터 소장은 계속해서 국가지뢰행동기구에 정책 및 전략수립에 관한 기술적 조언을 제공해야 하며 수정사항의 이행을 책임져야 한다.
- 2) 국가지뢰행동기구는 프로그램 예산 및 예산 모니터링을 설정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다. 단, 특정 자금조달 약정이 존재할 경우 이에 따라 해당 사안을 결정할 수 있다(may).
- 3) 국가지뢰행동기구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지뢰행동단체의 승인에 대한 책임을 진다. 지뢰행동센터 소장은 계속해서 이에 대해 조언해야 한다.

지뢰행동센터 소장의 추가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다.

- 4) 국가지뢰행동기구에게 프로그램 내 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
- 5) 필요에 따라 국가지뢰행동기구 회의조정. 또한 국가지뢰행동기구의 정기회의 참석(should).
- 6) 기부자, 유엔 및 기타 이해당사자에게 국가지뢰행동기구를 대신하여 외부 보고서 준비

위 조항 D.1.2조에 설명된 지뢰행동센터 소장의 나머지 역할은 여전히 적용된다.

D.2. 전략관리부

오염 정도에 따라, 지뢰행동센터는 지뢰행동센터 소장이 다음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may).

- 1) 예를 들어 광범위한 조사(비기술조사 및 기술조사), 피해자 관찰시스템 및 지뢰행동 지원을 위한 업무 프로그램과 요구사항에 관한 정부와 국제기구와의 정기적 협의에 기초한 지뢰행동 서비스에 대한 현재, 새로운, 미래 니즈의 완전하고 정확한 사정(査定)을 결정하고 유지하는 것.
- 2) 지뢰행동 프로그램 자체의 업무를 포괄할 뿐 아니라, 지뢰행동이 기타 공공 서비스의 전달 및 개발투자 프로젝트(교육, 의료, 도로, 전력, 지역개발 등)의 구현을 지원함으로써 어떻게 광범위한 개발 우선순위와 일치하는지를 포괄하는 국가지뢰행동전략 및 다년간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
- 3) 예를 들어, 제거 사후 토지이용 조사, 비용효과 연구, 지뢰행동으로 지원되는 업무 프로그램을 보유한 정부와 국제기구와의 정기적인 협의를 기반으로 사회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는 지뢰행동 프로그램에 의해 달성된 결과를 사정하는 것.

D.3. 법률부

지뢰행동 프로그램의 요건에 따라 지뢰행동센터는 법적 부분이나 법률 서비스를 외부에 요청할 수 있다(may). 만약 법률부서가 설치된다면, 법률부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다.

- 1) 지뢰행동의 입찰 및 계약
- 2) 국제 및 국가 규정과 표준의 해석
- 3) 국가지뢰행동표준과 같은 지뢰행동센터에서 만들어진 문서들이 준수에 대한 요구수준을 확실히 하기 위해 적절히 표현되었는지 확인하는 일.

또한 외부기관이 지뢰행동으로 인해 지뢰행동센터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뢰행동센터에게 조언하기 위하여 법률부서가 필요할 수 있다(may). 여기에는 지뢰행동단체 또는 지뢰행동센터가 행한 변명, 누락 또는 태만으로 인해 개인이 손해를 입었거나 재산이나 시설이 손상되는 상황이 포함될 수 있다(may).

D.4. 운영부

운영부는 지뢰행동 프로그램 안에서 수행되는 모든 지뢰행동 활동을 관리한다. 운영부의 책임

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may).

- 1) 운영 레벨에 따라 지뢰행동의 지원을 요청하는 단체와 연락함, 특히 인도적 활동단체 및 개발단체
- 2) 지뢰행동센터 소장에게 기술적 조언과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 3) 국가지뢰행동계획의 개발 및 관리를 보조함
- 4) 프로그램에 참여할 지뢰행동단체의 선정을 지원
- 5) 지뢰행동단체의 인정을 모니터링
- 6) 지뢰행동센터의 정보관리 및 지리정보시스템 기능의 모니터링
- 7) 국가지뢰행동표준, 지뢰행동 활동의 관리를 위한 내부 시스템과 절차 및 기타 국가 기술 간행물의 개발 및 관리
- 8) 지뢰행동 업무의 계획과 관리. 여기에는 지뢰행동의 작업계획, 특정 작업계획, 작업할당, 작업계획 및 개별작업 사이의 진행 상황 모니터링, 지뢰행동단체 간 인수인계관리, 전문가지원조정, 변화 관리, 작업인계(지역 제거작업), 지뢰행동 중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비상대응의 관리, 일상적인 보고의 관리 등이 포함됨.
- 9) 요구되는 기술, 품질, 산업안전보건의 표준이 반드시 적용되도록 지뢰행동 활동 모니터링 및 검사 감독
- 10) 필요에 따라 운영부의 담당 부서의 작업 조정
- 11) 신규장비 또는 절차의 시험평가를 조정하거나 관리. 시험평가는 지뢰행동단체 또는 지뢰행동센터 자체에서 수행할 수 있음(may)
- 12) 지뢰행동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의 조정. 여기에는 신규직원을 위한 신규입사자 교육, 정기 재교육 또는 프로그램에 새로운 절차나 장비가 도입될 때의 입문교육이 포함될 수 있음(may)
- 13) 정보수집 및 정기보고서 작성의 모니터링
- 14) 지뢰행동센터 및 지뢰행동단체와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내외적 정기회의를 조정하고 촉진함
- 15) 매체, 방문자 및 기타 이해당사자를 위한 정기적인 브리핑의 진행
- 16) 사건조사의 실시. 여기에는 사건조사의 결과에 따른 필요한 시정조치 및 교정조치가 수행되는지의 확인을 포함
- 17) 국가지뢰행동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통신망 통제소가 되는(should) 지뢰행동센터의 통신센터 관리

운영부서에는 특정 지뢰행동 활동을 관리하거나, 소통, 품질경영 또는 정보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각각 수립된 여러 담당 부서가 포함된다. 이러한 담당부서(피해자지원, 지뢰 탐지전, 기계적 파괴 및 비축물 파괴)의 설치는 지뢰행동 프로그램이 해당 활동을 수행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피해자지원, 지뢰위험교육, 지뢰 탐지전, 기계적 파괴 및 비축물 파괴와 같은 전문적 담당 부서들이 지뢰행동센터의 소속부서로 설치된 경우, 이 담당 부서는 전문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가지며, 여기에 다음을 포함한다.

- 18) 국가지뢰행동표준에 포함된 전문성과 관련하여 지뢰행동센터의 책임 수행
- 19) 교육, 장비의 시험평가, 인정, 작업할당, 모니터링, 검사, 평가 또는 검증, 장비관리, 사건조사에 대한 조언 또는 참여
- 20) 지뢰행동센터 소장, 운영부장, 지뢰행동단체, 지뢰행동에 관여하는 기타 조직 및 지뢰행동 지원을 받는 단체에 전문가로서의 조언을 제공함
- 21) 전문성과 관련된 지뢰행동프로그램 활동의 조정
- 22) 국가지뢰행동계획, 국가지뢰행동표준, 내부 절차 및 지뢰행동센터에 의해 만들어진 기타 기술서의 발전에 기여

D.4.1. 품질보증 및 품질관리 담당부서

지뢰행동센터의 품질보증 및 품질관리 담당부서들은 운영부서 밑에 설치되어(should) 지뢰행동 프로그램의 품질보증 및 품질관리 기능과 프로그램 내 지뢰행동 프로젝트를 조정 및 운영해야 한다. 품질보증 및 품질관리 기능에는 시험평가가 요구되는 인정, 모니터링 및 지뢰제거 사후 검사, 비축파괴 검증, 지뢰위험교육 평가 등이 포함된다.

참고: 전문부서는 또한 그 전문성을 가지고 품질보증 및 품질관리를 지원한다.

품질보증 및 품질관리 기능은 수행기능에 따라 인가된 특정 단체 또는 지뢰행동센터의 소속부서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may). 이는 프로그램의 규모와 가용 자원에 따라 달라진다. 별도의 단체를 이용하는 경우, 이상적으로는 해당 단체는 모든 외부의 품질보증 및 품질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좋다(should).

또한 품질보증 및 품질관리 담당 부서는 운영부의 지침에 따라 국가지뢰행동표준의 제작 및 관리, 사건 조사를 수행할 책임을 갖게 될 수 있다(may).

D.4.2. 정보관리 및 지리정보시스템 담당 부서

정보관리 및 지리정보시스템 담당 부서는 컴퓨터 기반의 정보관리시스템과 지리정보시스템(지뢰행동정보관리시스템 등)을 관리하고, 지뢰와 관련된 모든 보고서를 수신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하위실행부서는 데이터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수집, 평가, 검증, 필요한 경우 정보의 배포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정보관리 및 지리정보시스템 담당 부서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갖는다.

- 1) 지뢰행동 및 기타 인도적 또는 개발 활동의 우선순위 부여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입수하고 공유하기 위해 외부조직과의 연락
- 2) 효과적인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계획수립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뢰행동 정보와 지뢰행동 활동에 영향을 주는 관련 정보의 종합
- 3) 업무의 우선순위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보고서, 지도 및 기타 관련 정보의 제공
- 4) 계획, 작업계획 및 개별 업무계획의 작성 및 운영을 지원
- 5) 프로그램에 대한 통합된 정기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정보의 정례적 요약 및 수집
- 6) 성별과 연령에 따라 나누어진 분류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고 보관되는 데이터의 확인.

정보관리, 지뢰행동 활동의 계획 및 관리에 있어서 정보관리 담당부서와 계획 및 현행작업 부서의 긴밀한 조정은 필수적이다.

D.4.3. 피해자지원

지뢰행동 프로그램의 요구사항에 따라, 지뢰행동의 피해자지원 단체의 활동을 모니터하고 조정하기 위해 지뢰행동센터의 운영부 소속으로 하나의 담당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may). 그러나 일반적으로 피해자지원은 지뢰사고뿐만 아니라 지원범위를 다른 사건의 피해자 전반으로 하는 외부단체에 의하여 운영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

D.4.4. 지역사회소통

지역사회소통은 지뢰위험교육과는 분리되어 왔는데, 그것은 같은 조직이 두 기능을 다 수행한다고 해도 지역사회소통은 교육과는 별개의 기능이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 지뢰행동단체들이 자신들의 소통기능을 수행할 수 있지만(may), 지뢰행동센터 안에 하나의 특정한 부서를 설치하여 지뢰행동 활동과 연계하여 소통기능을 운영하거나 수행할 수 있다(may).

지역사회소통 부서의 책임은 지뢰행동 활동 전, 중, 후에 지뢰피해 지역사회와 소통을 수행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의 지역사회 소통도 포함될 수 있다(may).

- 1) 지뢰행동종합평가(GMAA) 프로세스의 일부로 수행되는 조사활동에서
- 2) 지뢰행동 수행 전에, 지뢰행동의 우선순위 결정 및 계획수립에 남성, 여성 및 어린이의 요청이 포함되도록 하기 위해서
- 3) 지뢰제거를 위한 작업장 준비의 일환으로, 피해지역의 지역사회가 곧 시작되는 지뢰제거 작업의 범위, 작업에 따른 위험성, 적용되어야 할 경고시스템, 정상적인 활동에 대한 지장 및 수행되어야 할 지속적인 소통 활동을 인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 4) 지뢰행동 작업이 진행 중일 때 지역사회에 진행상황을 업데이트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그와 관련된 토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정기적 소통을 위해서

- 5) 불발자탄을 포함하여 지뢰 또는 전쟁잔류폭발물이 일반인에 의해 발견되는 일이 발생할 때
- 6) 업무 이양의 일환으로
- 7) 지뢰제거 사후 검토 일환으로
- 8) 지뢰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와 지뢰행동센터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한 기타 일상적인 소통

지뢰행동센터의 요구사항에 따라 지역사회소통 기능은 지뢰위험교육 담당부서의 한 파트로서 포함될 수 있지만,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행되어야 할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should).

D.4.5. 지뢰위험교육

지뢰위험교육 부서는 운영부의 소속으로 설치되는 것이 좋으며(should),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지뢰위험교육단체의 활동을 관리하고 조정한다. 지뢰위험교육과 지뢰제거 활동은 밀접하게 연계되는 것이 좋으며(should), 이런 활동 정보가 장래의 작업계획 수립과 우선순위 결정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D.4.6. 계획 및 현행작업

이 두 담당부서는 운영부의 통제와 지뢰행동센터의 담당 전문부서들과 협력하면서 모든 지뢰 제거 작업(필요한 경우 비축물 파괴)의 계획, 조정 및 관리를 담당한다. 그 기능은 장래의 작업 계획 및 현행작업으로 구분되지만,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지뢰행동센터의 자원에 따라 하나의 조직이 수행할 수 있다(may).

일반적인 책임은 다음과 같다.

- 1) 계획. 지뢰행동 작업계획의 작성, 특정 작업계획, 지뢰제거 작업할당, 작업에 대한 전문가 지원의 조정 및 작업 계획의 진행 모니터링 등. 계획 담당부서는 프로그램의 기술조사 구성요소를 관리할 수 있다(may).
- 2) 현행작업.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뢰제거 작업의 모니터링, 지뢰행동단체들 간의 인수인계 관리, 전문가 지원의 지속적인 조정, 작업의 진행상황 모니터링, 작업의 변경관리, 작업인계(지역 제거작업의 경우), 비상대응 작업관리 및 정기적인 작업 보고 관리.

이런 책임은 운영부의 지시에 따라, 정보관리 및 지역사회소통 담당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실시한다.

D.4.7. 지뢰 탐지견, 기계적 파괴 및 비축물 파괴

지뢰행동 프로그램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운영부 소속의 지뢰 탐지견, 기계적 파괴 및 비축물 파괴 담당 전문부서가 설치되어 프로그램 내에서 관련 활동을 관리하고 조정할 수 있다(may).

D.4.8. 통신센터

통신센터는 국가지리행동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통신망 통제소로서 지리행동센터 내에 설치될 수 있다(may). 국가 네트워크는 지리행동센터에 의해 설립된 지역본부 및 모든 지리행동 단체의 본부들과의 연결을 포함하는 것이 좋다(should). 또한 국가 네트워크는 지리행동센터에 대한 내부 통신과 지리행동센터의 협력활동단체(예:품질보증 및 품질관리단체)를 포함할 수 있다. 다양한 통신매체가 포함될 수 있다(may).

D.5. 지원서비스

지원서비스부는 물류, 인사 및 행정 기능을 포함한다. 지리행동센터의 크기와 그 지원 요구사항에 따라 서로 다른 기능을 담당하는 별도의 담당 부서가 있을 수도 있고, 한 부서가 이들을 모두 담당할 수도 있다. 지원서비스부는 또한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정운영을 수행하는 재무담당 부서를 관리할 수 있다.

D.5.1. 물류담당부서

본 담당부서는 지리행동센터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차량, 컴퓨터와 기술 장비를 포함한 장비 및 자재의 조달, 보관, 회계 및 유지관리를 담당한다. 또한 사무실시설(국가 및 지역), 교육훈련시설, 폭발물 보관시설, 폭발물 처리구역 및 시험 구역을 포함하여 지리행동센터가 담당하거나 사용하는 시설의 관리 및 유지보수를 책임지는 것이 좋다(should).

지리행동센터가 직접 자체적인 지리행동 활동을 담당하는 경우, 물류 담당부서는 이런 활동을 위한 지리행동장비의 조달에 책임이 있다. 여기에는 국제지리행동표준의 03.10 - 03.40시리즈에 따른 지리행동장비의 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개발이 포함될 수 있다(may).

D.5.2. 인사 및 행정

본 담당 부서는 지리행동센터를 지원하기 위해 일상적인 인사 및 행정 업무를 담당한다. 여기에는 직원모집, 개인계약, 급여 및 수당 관리, 휴가, 여행, 복지, 건강, 서류 복사 및 정리 등이 포함된다. 최우선적인 인사행정 절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본 담당 부서가 인사관리 및 행정에 대한 절차의 개발을 요청받을 수 있다(may).

참고: 채용은 포괄적이고 성별에 민감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should).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출산을 장려하고 직원 간 다양성을 권장하며 급여 및 승진에 대한 투명한 시스템을 갖춘 건전한 인사정책이 마련되는 것이 좋다(should).

D.5.3. 재무

본 담당 부서는 지뢰행동 프로그램에 할당된 일상적인 재정업무를 담당하며, 프로그램 예산의 전반적인 관리는 지뢰행동센터 소장의 책임이다. 재무담당부서는 정기적인 지급(급여, 임대료, 공공요금 등), 재무 회계, 정기적인 재무 보고 및 예산 편성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만약, 우선적인 재정절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예: 유엔 또는 국가재정절차 등), 본 담당 부서는 재정 관리를 위한 절차를 개발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다(may).

D.5.4. 기타 지원기능

지원서비스부는 지뢰행동센터를 지원하는 운전기사 또는 번역자를 관리할 수 있지만(may), 번역자는 프로그램 지원부에서 관리할 수도 있다(may).

개정 기록

국제지뢰행동표준의 개정관리

국제지뢰행동표준 시리즈는 3년을 기준으로 공식적 검토를 필요로 하지만, 운영의 안전성 및 효율성 또는 편집상의 목적을 위하여 3년 기간 이내에 개정된다.

본 국제지뢰행동표준에 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아래의 표에 번호, 개정날짜 및 일반적인 세부사항이 기록된다. 또한 개정내용은 국제지뢰행동표준의 표지에 편집일 아래 ‘통합개정번호 1등’의 문구를 넣어서 표시한다.

각 국제지뢰행동표준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가 완료될 경우에 새로운 개정판이 발행될 수 있다 (may). 새로운 판의 최신 수정조항들은 새 판에 통합되고 정리된 개정기록표에 통합된다. 추가 재검토가 수행되면 개정기록은 다시 등재된다.

가장 최근의 국제지뢰행동표준은 웹사이트(www.mineactionstandards.org)에 등록되어 있는 개정판이다.

번호	일자	세부 개정 사항
1	2010.03.01	1. 국가지뢰행동기구 정의 업데이트, 지뢰행동센터 정의 포함 2. 유엔지뢰행동조직 주소 업데이트 3. 부속서 B를 삭제하고 부속서 C를 B로, D를 C로, E를 D로 다시 명명 4. 소형폭탄문제 및 성별문제에 부합하기 위한 최소한의 변화
2	2012.08.01	1. 조직제목 검토 및 개정(UNODA) 2. 국제탄약과학기술지침서 개발 영향 검토 3. 사소한 글자 수정
3	2013.06.01	1. 토지해제 국제지뢰행동표준 영향 검토 2. 제목과 머리글에 포함된 개정번호 3. 인용표준 업데이트 4. 이전 국제지뢰행동표준 08.10 일반적인 지뢰행동 사정평가의 제 4.3항과 부속서 A의 인용표준 삭제